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산재보험 가입 시 승인 절차 폐지 〉
■ 김태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606호)

2025. 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손을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주요내용	2
2. 검토의견	4

I. 제안경위

2024년 10월 8일 김태년위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다양한 중·소기업 사업주를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폭넓은 산재보험 가입 지원을 어렵게 만들 수 있음.

이에 현행 규정에서 중·소기업 사업주와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보험에 가입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여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24조).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¹⁾ 및 그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²⁾을 갖추어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가 아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함.³⁾) 이하 ‘무급가족종사자’)의 산재보험 임의가입 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요건을 폐지함.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4조(중·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	제124조(중·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특례) ① ----- ----- -----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① 법 제1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2.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다만, 노무제공자는 제외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④ 법 제1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로부터 노무 제공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고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자가 되는 경우 그 사업주는 산재보험 당연가입자가 됨.

자기 또는 유족

[illegible]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 신 청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중·소기업 사업주와 그 무급가족종사자(이하 ‘중소기업사업주등’)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거쳐 산재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영세한 사정에 비추어 중소기업사업주등을 근로자와 유사한 수준에서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중소기업사업주등의 개념에 관하여는 동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하면서도 중소기업사업주등의 산재보험 가입 승인에 관한 사항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도록 규정하는데,⁴⁾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중소기업사업주등이 특정업무(분진·진동·납 및 유기용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⁵⁾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가입을

4) 제124조(중·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특례) ⑧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사업주등의 보험료의 산정, 보험 가입의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보험관계의 소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② 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제1호, 제3항 및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⁶⁾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중소기업사업주등의 산재보험 가입 신청 건수는 13,310건이고 이 중 불승인 건수는 40건(불승인률 0.3%)이며, 불승인 사례 중 36건은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불승인 처리되었음.⁷⁾

개정안은 중소기업사업주등의 산재보험 가입 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절차를 폐지함으로써 임의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사업주등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자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영세성 등에 비추어 근로자와 유사한 보호가 필요한 중소기업사업주등을 산재보험을 통해 두텁게 보호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제135조(특수건강진단기관)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또는 수시건강진단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기관(이하 “특수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 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의2(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이하 “중소기업 사업주”라 한다)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이하 “가족종사자”라 한다)은 별지 제57호서식의 중소기업 사업주·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한다.

1. 건강진단서[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가 분진·진동·납 및 유기용제 관련 업무(이하 “특정업무”라 한다) 종사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청구에 따른 판결문 또는 인우보증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실혼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공단은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한 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가 특정업무 종사자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해야 하며, 진단 결과 그 사업주와 가족종사자의 건강 상태가 같은 법 제132조제4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 7) 이외에는 본인이 신청 철회하거나, 사업 실체가 없거나, 노무제공자로 판단되어 노무제공자로 가입시킨 사례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것임.

특히,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 여부에 차등을 두는 것은 중소기업사업주등을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로 보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중소기업사업주등의 임의가입 허용 규정의 취지에 배치될 수 있고, 해당 기준이 근로자와 중소기업사업주등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구분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개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임.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절차는 산재보험 가입 여부 및 시점을 본인이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임의가입 체계의 특성상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 해당하는바⁸⁾ 이를 폐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40

8)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는 일하는 시점부터 산재보험에 당연(의무) 가입인 반면, 중소기업사업주등은 임의가입 대상으로, 본인이 보험에 가입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가입한다면 가입 시점도 스스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데, 임의가입 제도 하에서 별도의 건강검진 및 건강보호조치 없이 보험 가입이 되는 경우 중소기업사업주등은 분진, 납 등 유해인자에 의한 질병에 이미 걸렸거나, 걸릴 위험이 매우 큰 상황에서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할 유인이 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승인 절차를 두었다고 보고 있음.